「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❍ 제 안 자 : 남진삼 의원
- ❍ 제안일자 : 2026. 09. 23.
- ❍ 회부일자 : 2026. 10. 08.
- ❍ 상정일자 : 2026. 10. 13.

2. 제안이유

- ❍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여 선임 절차와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,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, 수당·여비 등 실비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결산검사위원 정수 및 선임 절차 정비(안 제2조, 제3조)

나. 결산검사위원의 결격사유 구체화(안 제4조)

다. 검사기간 연장 절차 정비(안 제5조)

라. 결산검사위원 수당·여비 등 지급기준 정비(안 제11조)

4. 종합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구성과 선임·운영 절차를 정비하고 위원의 이해관계 제한 및 실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❍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시·군 및 자치구의 결산검사위원 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수와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이에 따라 위원 정수를 7명으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 절차를 정비하고, 안 제4조에서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였음. 또한, 안 제5조에서 검사기간 연장 절차를 의장의 승인으로 간소화하였으며, 안 제11조에서는 수당과 여비 등 실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음.

❍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구성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여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, 이해관계 제한 등을 통해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므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제150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

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(이하 “검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수는 시·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(常勤)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.